

한샘 협력사 행동규범

한샘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아래의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한샘은 협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A. 노동

1) 강제 노동의 금지

협력사는 강제 혹은 착취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위협, 폭력, 사기 등의 위해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아동 노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완료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3) 근로시간의 준수

협력사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과근무는 반드시 유급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는 급여 관련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강압, 폭언 등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을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를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안전보건

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작업장 위생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파악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설비안전

협력사는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C. 환경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2) 오염물질 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사용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람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운송, 보관, 사용 및 폐기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폐기물 처리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 후 배출/폐기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기와 같이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법률

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 윤리

1) 반부패

협력사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뇌물수수, 갈취, 횡령 등의 반부패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감시 및 단속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3) 공정경쟁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광고, 경쟁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한샘은 원재료 조달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지원하거나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 텡스텐, 탄탈륨 또는 금(분쟁광물)과 같은 상품 또는 원자재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이에 한샘의 협력사는 (1) 불법으로 벌목된 목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가능 인증(FSC, PEFC)을 취득하거나 재활용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고됩니다. 또한, (2) 가죽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조달된 과정이 입증되거나, Leather Working Group의 인증을 취득한 가죽을 사용하도록 권고됩니다.

F.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1) 협력사의 경영활동 및 제품과 관련한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2) 본 규범을 준수하고, (3)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